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융합경영학부(글로벌경영전공) 비전임교원 임용공고

○ 분야별 모집인원

모집분야	선발직종	인원	비고
국제경영(기업경제학)	초빙교수	0명	[우대]외환론 강의 가능자
국제경영(국제경영)	초빙교수	0명	[우대]경영전략론, 글로벌제품혁신관리 강의 가능자
국제경영(무역)	초빙교수	0명	[우대]국제통상론 강의 가능자
회계학	초빙교수	0명	[우대]회계데이터에널리틱스 강의 가능자
인사/조직/노사(노사)	초빙교수	0명	[우대]노동법, 노사관계론 강의 가능자
인사/조직/노사(조직)	초빙교수	0명	[우대]리더십, 기업가정신 강의 가능자 [우대]영어 강의 가능자
창업	초빙교수	0명	[우대]창업과소셜미디어마케팅 강의 가능자 [우대]중국어 강의 가능자

- 임용예정일: 2027.03.01., 임용기간: 2027.03.01.~2028.02.29.(1년)

○ 지원자격

- 공통사항: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 정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통사항 외 직종별 지원자격은 별도 자료 참조

○ 지원기간

- 2026년 11월 23일(월) 13:00 ~ 2026년 11월 30일(월) 13:00

○ 지원절차

- 제출 서류 : 이력서 (학력, 경력(연구/교육 이력 포함)) (자유양식)
- 제출 방법 : 글로벌경영전공 담당자 이메일(alice87@korea.ac.kr) 로 제출
- 메일 제목 : 2027학년도 비전임교원 임용 지원 (메일 제목에 지원 분야 기재)

- 임용 후보자 발표: 심사 후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임용 후보자로 통보 받은 자는 교수초빙지원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서류를 임용 부서에 추가로 제출함(교수초빙지원시스템: http://invite.korea.ac.kr)

【제출서류_임용후보자에 한함】

1. 이력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2. 신분증명서 (내국인은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은 여권사본)
3.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또는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
   * 회신서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임용대상자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임용부서에서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경력조회를 요청
   (지난 계약만료일과 신규 계약시작일 사이에 공백이 없는 경우 제출 불요)
4. 강의계획서 또는 활동계획서
   - 초빙교수는 강의계획서와 활동계획서 모두 제출함
5. 그 밖에 직종별 자격기준 판단을 위한 필요서류(겸임교수 : 겸직동의서 등)

○ 기타사항

-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을 무효로 처리하고, 임용 이후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채용공고는 연장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지원자의 성별, 신앙,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음.
- 문의사항은 융합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행정실(044-860-1599)로 연락바람.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장

<별도 자료>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고등교육법 제16조 관련)

(단위: 년)

학력 / 연구·교육 경력연수 / 직명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조교수	2	2	4	3	4	7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비전임교원 직종별 자격기준】

【비전임교원】

① 국가의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2.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국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 겸임교원: 외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임용된 교원으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임용된 교원

1.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2.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2. 초빙교원: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본교가 특별히 초빙하는 교원

1.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대학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3.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자

3. 객원교수: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을 수행하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명예교수로서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경력과 업적을 갖춘 사람
2.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으로서 협약에 따른 공동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4.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중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함) 10년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임용계약 시 경력완화 적용 사유 등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이 1회 이상인 자(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2.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3.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